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51
----------	------

2025. 10. 17.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3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9. 3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10. 17.)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 통합지원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 사무의 위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 그 밖에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18조)

3.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화·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 대응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돌봄통합지원체계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맞으며, 돌봄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함.
- 다만, 향후 세부 사업 운영 시 중앙·지방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예산 부담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광양시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의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광양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별 맞춤 서비스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복약지도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사업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광양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

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⑥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광양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지켜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